

○ ○ ○ 검 찰 청

우편번호/ 주소 전화/ 팩스/

등록번호

수 신: ○○○장

발 신: ○○○검찰청검사장대리

검 사:

인

제 목: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

귀 기관 소속 직원 에 대한 사건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으므로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제3항(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제3항, 「군인사법」 제59조의3제1항, 「사립학교법」 제66조의3제1항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의2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의2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7조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80조의2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2)에 따라 통보합니다.

사 건 번 호	년	형제	호
피 의 자	성 명		
	주민등록번호		
	소속 및 직위		
결 정 일 자	죄 명		결 정 내 용
. . .			
. . .			
. . .			
. . .			
. . .			
. . .			
. . .			
피 의 사 실 요 지			
비 고	귀 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사건이 위와 같이 결정되었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통보하오니 적절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